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설명자료

2025. 1.

양형위원회

I. 개요

- 의견조회 및 공개 대상인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등을 소개하여, 이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설정 배경
 -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이 있는 상황임
 -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의 발생건수는 경찰 접수 건수 기준으로 2010년에 약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약 1,072건, 2022년에 약 1,23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동물보호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보호법위반 범죄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없애며,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벌금형 선고 비율이 약 75%에 이르러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도 있음
- 설정 경과
 - 2023. 6. 12. 제125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자유형 및 벌금형)을 제9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로 의결

- 2024. 6. 17. 제132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¹⁾ 양형기준 설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 2024. 11. 1. 제135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심의(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2025. 1. 13. 제136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추가 심의(양형인자) 및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의결
- 2025. 1. ~ 2025. 2.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공개
- 2025. 2. 17.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예정
- 2025. 3.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의견 검토 및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

(이하 여백)

1) 단일한 대상 법률에 따라 명칭을 간명하게 하고, 추후 설정 범위의 확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회의에서 양형기준의 명칭을 ‘동물보호법위반범죄’로 하기로 함.

II.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1. 고려 사항

- ▣ 범죄의 발생 빈도와 그 사회적 영향 정도, 법정형과 죄질, 국민의 법 감정과 국민적인 관심도, 범죄의 성격상 양형기준 설정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대상을 결정함
- ▣ 선고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행위 유형, 법정형과 죄질,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범죄, 유사범죄를 참조하여 양형기준 설정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는 설정 대상에 포함함

2. 설정 범위에 포함된 범죄

가. 개요

- ▣ 다음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함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동물보호법 §97 ① 1호	§ 10 ① 1호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년 ↓, 3,000만 원 ↓
	§ 10 ① 2호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10 ① 3호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10 ① 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97 ① 2호	§ 10 ③ 2호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등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10 ④ 3호	빈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97 ②	§ 10 ② 1호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년 ↓, 2,000만 원 ↓

1호	§ 10 ② 2호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10 ② 3호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10 ② 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 97 ② 3호	§ 10 ④ 2호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 97 ⑥	§ 97 ① ~ ⑤	상습적으로 위 각 죄를 지은 경우	위 각 형의 1/2 까지 가중

나.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전형적인 동물학대 범죄유형으로서 범사회적인 양형기준 신설 요청이 있음
- 발생빈도가 높고 신고 사례가 축적되어 있어 형량범위, 양형인자 등의 추출이 가능함
 -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등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제10조 제3항 제2호)의 신고 사례는 많지 않지만, 제10조 제1항 위반범죄를 참조하여 양형기준 설정이 가능함

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제97조 제2항 제1호(제10조 제2항), 제3호]

- 전형적인 동물학대 범죄유형으로서 범사회적인 양형기준 신설 요청이 있음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의 신고 사례가 축적되어 있어 형량범위, 양형인자 등의 추출이 가능함
 -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

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제97조 제2항 제3호)의 선고 사례는 많지 않지만, 제97조 제2항 제1호와 법정형이 같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가 동일하므로, 체계정합성상 양형기준을 함께 설정함

라. 상습적으로 위 각 죄를 지은 경우(제97조 제6항)

- 다만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 등 양형기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임

(이하 여백)

Ⅲ.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유형 분류

1. 유형 분류의 일반 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은 공통되어야 함

2. 유형 분류안

가. 논의의 전제

- ▣ 유사한 특성을 가진 범죄를 같은 대유형으로 묶음 ⇨ 양형인자 공통
- ▣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를 같은 소유형으로 묶음 ⇨ 형량범위 공통

나. 유형 분류안

- ▣ 대유형 분류 ⇨ 별도로 분류하지 아니함
 - 대상 법률이 동물보호법으로 동일하고, 보호법익도 동일함
 - 양형기준 설정 범위가 넓지 않고 소유형이 2개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분류를 하지 않는 체계가 일목요연함
- ▣ 소유형 분류 ⇨ 2개로 분류
 - 법정형에 따라 ①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②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

는 행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를 소유형으로 분류함

- 위와 같은 분류가 범죄의 결과에 따른 분류와도 일치함

다. 소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하 여백)

IV.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및 형종 선택의 기준

1. 고려사항

▣ 권고 형량범위 설정 방식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함
-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죄질이 나쁜 유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

▣ 형종 선택의 기준 설정 방식 ⇨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함

- 일반적으로 감경·기본·가중의 3단계 권고 영역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크게 ‘벌금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 ‘벌금형 또는 자유형의 선택을 권고하는 영역’, ‘자유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을 제시하는 안을 상정할 수 있음
-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서는 양형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감경·기본·가중영역 전체에서 벌금형 및 자유형에 관한 형량범위를 권고함
- 다만 법관이 법정형, 불법과 책임의 정도 등 당해 범죄의 특수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양형을 가능하게 함

-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보호범위가 과충류, 양서류 및 어류까지 이르러 상당히 넓은 점, 동법의 구성요건상 범죄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 벌금액 산정 방법

- 입법 실무는 법정형을 정할 때 원칙적으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응 이를 기준으로 하되, 범죄의 종류와 죄질, 양형통계 등을 반영하여 적절히 가감하는 방법으로 설정함

2.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소유형 1)

가. 유형의 정의

- ▣ 양형기준안 [유형의 정의] 참조

나. 형량 분포²⁾ 등

- ▣ 징역형

단위: 명, %, 월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6	8	10	12	18	36		
동물보호법 97조1항1호	수	1	2	4	3	1	-	1	1	13	9.46
	비율	7.7	15.4	30.8	23.1	7.7	-	7.7	7.7	100.0	

- 법정형은 3년 이하이고, 평균형량은 9.46월임

2) 이하 동물보호법위반범죄 관련 통계는 모두 2018. 3. 22.부터 2023. 12. 31.까지 선고된 단일 및 동종경합범임[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설정 대상범죄 분석 III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성범죄(추가)」, 16~18쪽].

- 최하한은 3월, 최상한은 36월임
- 빈도는 6월(30.8%), 8월(23.1%), 4월(15.4%) 순임
- 구체적 사례

■ 사례1(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고단****): 징역 18개월

아내와의 불화로 기르던 애완견을 학대하여 죽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분양받은 애완견 20여 마리를 죽이거나 학대한 사례

■ 사례2(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단***): 징역 36개월

번식농장주로부터 교부받은 개 1,243마리 등에게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례

▣ 법정형(징역 3년 이하) 동일 범죄군의 권고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재물손괴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폭력범죄	협박범죄	일반협박	- 8월	2월 - 1년	4월 - 1년6월
주거침입범죄	일반적 기준	주거침입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퇴거불응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주거·신체수색	- 6월	4월 - 1년	8월 - 2년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유기·학대	일반유기·학대 (유기죄)	-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강제집행면탈	- 8월	6월 - 1년	8월 - 2년

(이하 여백)

▣ 벌금형

단위: 명, %, 만 원

세부법조		벌금액(만 원)														전체	평균 벌금액
		30	50	60	70	80	90	100	150	200	300	500	550	700	1,500		
동물보호법 97조1항1호	수	-	1	-	-	-	1	10	1	4	6	5	1	1	-	30	254.67
	비율	-	3.3	-	-	-	3.3	33.3	3.3	13.3	20.0	16.7	3.3	3.3	-	100.0	

- 법정형은 3,000만 원 이하이고, 평균 벌금액은 254.67만 원임
- 최하한은 50만 원, 최상한은 700만 원임
- 빈도는 100만 원(33.3%), 300만 원(20%), 500만 원(16.7%) 순임

▣ 법정형 동일 범 죄 군(벌금 3,000만 원 이하)의 권고 형량범위

범 죄 군	대 유형	소 유형 (벌금 법정형)(만 원)	감 경	기 본	가 중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당내경선 관련 매수 (벌금 1,000↓, 3,000↓)	- 8월, 50만 원 - 500만 원	4월 - 1년	8월 - 2년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벌금 500-3,000, 1,000↓, 3,000↓, 5,000↓)	- 10월, 100만 원 - 1,500만 원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벌금 300-5,000, 500-5,000, 500-7,000)	6월 - 1년4월, 500만 원 - 2,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4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벌금 600↓, 1,000↓, 300-2,000, 3,000↓)	70만 원 - 300만 원	- 10월, 200만 원 - 8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벌금 500-3,000)	- 8월, 300만 원 - 600만 원	6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1년 - 3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벌금 법정형)(만 원)	감경	기본	가중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 처상 (벌금 1,000-3,000)	6월 - 1년6월 7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 처상 (벌금 500-3,000)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교통사고 후 도주	처상 후 도주 (벌금 500-3,000)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6년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	일반 스토킹범죄 (벌금 3,000 ↓)	- 8월, 100만 원 - 1,000만 원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 원	10월 - 2년6월

다. 검토

▣ 다음과 같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3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2,000만 원

▣ 징역형

- 법정형이 동일하고 범죄유형이나 죄질 등이 유사한 일반유기·학대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참조하되, 동물의 생명보호 등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재물손괴죄보다 상한을 높게 권고함
- 감경영역 및 기본영역의 상한은 일반유기·학대범죄 등 법정형이 동일한 다수 범죄의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8월 및 1년으로 설정함
- 기본영역에 평균형량 9.46월과 최빈값 3개[6월(30.8%), 8월(23.1%), 4월(15.4%)]가 모두 포섭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 건수 중 약 77%

가 기본영역에 속할 수 있도록 설정함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법정형 상한인 3년까지 권고하는 한편, 가중영역의 하한은 동물보호법상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중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함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데, 이를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이라고 함]

■ 벌금형

- 양형통계상 벌금 700만 원을 초과하여 선고된 사례는 없으나, 법정형(벌금 3,000만 원 이하),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들의 형량범위, 벌금액 산정 방법 등을 참조하여 규범적 조정을 가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함
- 감경영역의 하한은 100만 원, 상한은 700만 원으로 설정함
 - 감경영역에 전체 선고 건수의 약 96.7%를 포섭할 수 있음 ⇨ 통상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법정형 상한인 벌금 3,000만 원까지 권고함
- 가중영역에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보호범위가 상당히 넓고, 범죄 유형도 매우 다양하며,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모두 포함되

어 있는 점, 권고 형량범위가 더 높은 일반스토킹범죄의 가중영역에
서도 경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
려함

(이하 여백)

3.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소유형 2)

가. 유형의 정의

- ▣ 양형기준안 [유형의 정의] 참조

나. 형량 분포³⁾ 등

- ▣ 징역형

단위: 명, %, 월

세부법조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3	4	6	8	10	12	18	36		
동물보호법 97조2항1호	수	1	5	10	-	-	3	-	-	19	6.26
	비율	5.3	26.3	52.6	-	-	15.8	-	-	100.0	

- 법정형은 2년 이하이고, 평균형량은 6.26월임
- 최하한은 3월, 최상한은 12월임
- 빈도는 6월(52.6%), 4월(26.3%), 12월(15.8%) 순임

- ▣ 법정형(징역 2년 이하) 동일 범죄군의 권고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폭력범죄	폭행	일반폭행	- 8월	2월 - 10월	4월 - 1년6월
업무방해범죄	경매·입찰방해	일반 경매·입찰방해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체포·감금 유가·학대범죄	유가·학대	일반유가·학대	-8월	2월 - 1년	6월 - 1년6월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부정행사	공문서 등 부정행사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과실치사상산업 안전보건범죄	과실치사상범죄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3) 이하 동물보호법위반범죄 관련 통계는 모두 2018. 3. 22.부터 2023. 12. 31.까지 선고된 단일 및 동종경합범임[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설정 대상범죄 분석 III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성범죄(추가)」, 16~18쪽].

▣ 벌금형

단위: 명, %, 만 원

세부법조		벌금액(만 원)														전체	평균 벌금액
		30	50	60	70	80	90	100	150	200	300	500	550	700	1,500		
동물보호법 97조2항1호	수	6	6	1	3	1	-	14	3	9	10	2	-	-	1	56	178.21
	비율	10.7	10.7	1.8	5.4	1.8	-	25.0	5.4	16.1	17.9	3.6	-	-	1.8	100.0	
동물보호법 97조2항3호	수	-	-	-	-	-	-	-	-	1	-	-	-	-	-	1	200.00
	비율	-	-	-	-	-	-	-	-	100.0	-	-	-	-	-	100.0	

- 법정형은 2,000만 원 이하이고, 평균 벌금액은 178.59만 원임
- 최하한은 30만 원, 최상한은 1,500만 원임
- 빈도는 100만 원(24.6%), 200만 원(17.5%), 300만 원(17.5%) 순임
- 구체적 사례

■ 사례(울산지방법원 2020노***): 벌금 1,500만 원

동물소유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 반려견을 약 3개월 동안 6회에 걸쳐 주먹 또는 발로 차거나 목과 머리를 밟아 신체적 고통을 준 사례

(이하 여백)

▣ 법정형 동일 범죄군(벌금 2,000만 원 이하)의 권고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벌금 법정형)(만 원)	감경	기본	가중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벌금 2,000 ↓, 5,000 ↓)	4월 - 1년, 150만 원 - 2,0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허위사실공표·후 보자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벌금 600 ↓, 1,000 ↓, 300-2,000, 3,000 ↓)	70만 원 - 300만 원	- 10월, 200만 원 - 8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교통범죄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벌금 2,000 ↓)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교통사고 치사 (벌금 2,000 ↓)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이상) (벌금 1,000-2,000)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	2년6월 - 4년
		음주측정거부 (벌금 500-2,000)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1년6월 - 4년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등 위반	잠정조치 위반(벌금 2,000 ↓)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6월 - 1년,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

다. 검토

▣ 다음과 같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6월, - 500만 원	2월 - 10월, 100만 원 - 1,000만 원	4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 징역형

- 법정형이 동일하고 범죄유형이나 죄질 등이 유사한 양형기준을 참

조합

- 감경영역의 상한은 사람에 대한 폭행범죄, 학대범죄보다는 비교적 양형책임을 낮게 설정하고, 소유형 1의 감경영역과의 차이도 고려함
- 기본영역에 평균형량 6.26월과 최빈값 2개[6월(52.6%), 4월(26.3%)]가 포섭될 수 있도록 하고, 선고 건수 중 약 84.2%가 기본영역에 속할 수 있도록 설정함
-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의 하한은, 사람에 대한 폭행보다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의 하한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함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법정형 상한인 2년까지 권고함

▣ 벌금형

- 법정형(벌금 2,000만 원 이하),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범죄들의 형량범위, 벌금액 산정 방법 등을 참조하여 규범적으로 조정을 가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함
- 감경영역의 상한은 500만 원으로 설정하고, 기본영역의 하한은 100만 원, 상한은 1,000만 원으로 설정함
 - 감경영역에 전체 선고 건수의 약 98.2%를 포섭할 수 있음 ⇨ 통상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 점을 고려함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법정형 상한인 벌금 2,000만 원까지 권고함

V.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1. 특별가중인자

가. 행위인자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기·학대범죄 등 유사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2)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고, 체포·감금, 유기·학대, 폭력범죄 등 유사 범죄군에서 정한 바를 참조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경인자로 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동물 또는 그 소유자·관리자 등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범행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잔혹한 범행수법

- 살인범죄, 폭력범죄 등 유사범죄군에서 정한 바를 참조하여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함

- 양형실무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예컨대, 건물의 고층에서 바닥으로 던지는 경우 등
- 정의규정

○ 고통의 강도 또는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4) 중한 상해(2유형)

- 상해 등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경중에도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양형인자로 설정함
- 중한 상해나 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 이외의 결과 발생은 중립적 양형인자로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함
- 동물에 대하여도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치료 기간은 상해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인 점을 고려함
- 정의규정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5)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점을 고려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나. 행위자/기타인자

1) 동종 누범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2) 상습범인 경우

- 동물보호법 제97조 제6항이 상습적으로 동물보호법위반범죄를 지은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도 포함됨
- 유기·학대범죄 등 범죄군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는 점을 참조함

2. 특별감경인자

가. 행위인자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감금범죄, 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 등 유사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등은 조직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 반영될 여지도 충분함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체포·감금범죄, 유기·학대범죄 등 유사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양형실무에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판결례가 다수 있음
 - 예컨대, 피해동물에게 손이 물린 경우, 모친 간병 중 피해동물을 방치한 경우 등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경인자로 둔 것과의 균형을 고려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피해동물로부터 자신이나 동거인 또는 친족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체포·감금범죄, 유기·학대범죄 등 유사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고, 양형실무에서도 유리한 사정으로 설시한 사례가 확인됨

4)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죽이려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양형인자는 결과적 가중범을 전제로 적용되는 특별감경인자임. 죽이려는 고의가 없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함

- 방화범죄 양형기준에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 중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만 해당 양형인자를 적용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는 예(방화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3) 등을 참조함

- 정의규정

○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죽음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5) 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2유형)

- 상해 등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경중에도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중한 상해에 대응하여 양형인자로 설정함

- ‘경미한 상해’에 관한 정의규정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행위자/기타인자

1) 청각 및 언어장애인/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2)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이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 확대를 방지하거나 다른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⁴⁾

구분	보호법익	특별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일반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1-1	개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2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1	개인 및 국가·사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2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국가·사회	-	-

구분	범죄군
1-1	살인 / 강도 / 횡령·배임 / 약취·유인·인신매매 / 사기 / 절도 / 지식재산권 / 폭력 / 교통 / 공갈 / 체포·감금·유기·학대 / 장물/ 권리행사방해 / 업무방해 (1유형) / 손괴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1유형) / 명예훼손 / 주거침입 / 배임수증재
1-2	성범죄 / 성매매 (1-가 유형) / 디지털 성범죄 (2, 3, 4, 5유형) / 아동학대
2-1	선거 (3유형) / 방화 / 업무방해 (2유형) / 근로기준법 위반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2유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2, 3유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2유형)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2-2	식품·보건 (2, 3유형) / 성매매 (2-나 유형) / 도주·범인은닉 (1-2유형) / 디지털 성범죄 (1유형) / 위증 / 무고 / 공무집행방해
3	뇌물 / 공문서 / 사문서 / 식품·보건 (1유형) / 마약 / 증권·금융 / 선거 (1, 2, 4유형) / 조세 / 변호사법 위반 / 성매매 (나머지 유형) / 사행성·게임물 / 석유사업법 위반 / 도주·범인은닉 (나머지 유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1유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1유형)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환경

● 동물보호법위반범죄는 동물보호법의 목적 및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4) 2021. 8. 17. 제111차 양형위원회, 2021. 10. 8. 제112차 양형위원회 의결 내용.

2-1 유형에 해당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정책적 요청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

- 유사 범죄군인 체포·감금범죄, 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 등도 대체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피해 회복 관련 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

-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함

- ‘처벌불원’의 정의규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

-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규정

- 공탁이 독자적인 양형인자가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면서,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

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하도록 함

- 재산범죄 등 일부 범죄군의 정의규정에 포함된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라는 문구는,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서 재산적 피해만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하지 않기로 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3. 일반가중인자

가. 행위인자

1) 계획적인 범행

- 폭력범죄 등 유사 범죄군을 참조하여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정의규정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동물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행위자/기타인자

- 1)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약취·유인범죄, 유기·학대범죄 등 유사 범죄군을 참조함
- 특별가중인자(동종 누범)에 상응하도록 일반가중인자를 규정하고, 가중사유가 되는 동종 전과의 범위도 일치시킴

2)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되므로, 합의 시도 중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함
- 체포·감금범죄, 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 등 다수 범죄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4. 일반감경인자

가. 행위인자

1) 소극 가담

- 폭력범죄 등 유사 범죄군을 참조하여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
- 정의규정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행위자/기타인자

1)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고,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함이 타당함

- 양형기준에는 주취 등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서술식 기준이 있고, 해당 기준을 동물보호범위반범죄에도 반영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동물보호범위반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증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진지한 반성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범행 후의 정황’ 을 양형 참작 조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51조, 양형기준 설정·변경 시 ‘범행 후의 정황’ 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을 고려하여, ‘진지한 반성’ 을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면서 정의규정을 둬으로써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해 보다 신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정의규정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라는 행위자 요소를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는 양형기준 설정·변경시 행위자 요소인 ‘피고인의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을 고려하도록, 제7호는 ‘범죄 전력’ 을 고려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양형기준은 정의규정을 통해 의미를 제한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을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고, 이를 참조하여 양형인자로 설정함
- 정의규정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상당한 피해 회복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못 미치되,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의 피해 회복을 핵심요소로 하는 개념임
- ‘(공탁 포함)’ 이라는 문구를 두지 않음

(이하 여백)

5.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죽이려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 중한 상해(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여백)

VI.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 피해동물이 죽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2유형) ○ 피해동물이 죽거나(죽이려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한함)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

(이하 여백)